

제주지방법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542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제주특별자치도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1.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4,21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,21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란주

별지